

의안번호	2217866
의 퇴 인	박희승 의원
회 답 일	2026.4.14.
추계번호	26B1816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	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.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(제1항) 5. 제62조의2에 따른 유급병가 6. 제62조의3에 따른 상병휴직	의무규정
2	안 제62조의2(유급병가) 신설	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주어야 함(제1항) 1.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(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. 근로자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	의무규정
		사용자는 제1항의 병가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사용자는 병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병가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(제3항)	의무규정
		국가는 유급병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병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유급병가급여”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음. 이 경우 유급병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에서 분담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		제4항에 따라 유급병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(제5항)	의무규정
		근로자가 유급병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관계서류의 작성·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(제6항)	의무규정
		국가는 유급병가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우선사용 권장 방지,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(제7항)	의무규정
		그 밖에 유급병가의 신청방법·절차 및 유급병가급여의 지급요건·기간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(제8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62조의3 (상병휴직) 신설	사용자는 근로자가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병가를 소진하였음에도 여전히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휴직을 주어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상병휴직 기간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근로자가 인정 받은 상병급여 지급기간 이상이어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사용자는 상병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상병휴직 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(제3항)	의무규정
		국가는 상병휴직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		그 밖에 상병휴직의 신청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4	안 제109조(벌칙)	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, 제56조, <u>제62조의2제3항</u> , 제65조,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제1항)	의무규정
5	안 제110조(벌칙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. 제10조, 제22조제1항, 제26조, 제50조, 제51조의2제2항, 제52조제2항제1호, 제53조제1항·제2항, 같은 조 제4항 본문·제7항, 제54조, 제55조, 제59조제2항, 제60조제1항·제2항·제4항 및 제5항, <u>제62조의2제1항·제2항</u> , 제64조제1항, 제69조, 제70조제1항·제2항, 제71조,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75조,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, 제82조,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참조
2	안 제62조의2(유급병가)		
3	안 제62조의3(상병휴직)		
4	안 제109조(벌칙)	—	• 미대상 -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5	안 제110조(벌칙)		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안 제62조의2) 개정안은 연간 60일 범위의 유급병가를 도입하면서 국가가 유급병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병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임
 -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부상 또는 질병(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)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,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근로자가 “유급병가”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이때, 사용자는 병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병가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고용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 - 또한,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유급병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

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병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유급병가급여”)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유급병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유급병가의 사용자 수·임금·사용기간과 이에 대한 유급병가급여의 지급요건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다음의 이유로 추계하기 곤란
 - － 첫째, 개정안에 따른 유급병가의 사용 대상은 근로자 중 부상 또는 질병(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)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,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근로자이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해당 근로자의 규모와 이들의 유급병가 신청률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유급병가의 사용자 수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둘째,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병가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국가로 하여금 유급병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병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유급병가 사용자의 업종과 직군 및 이들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, 장래에 발생할 유급병가 사용자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국가의 유급병가급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기간 및 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
 - － 셋째, 개정안은 유급병가의 신청방법·절차 및 유급병가급여의 지급요건·기간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또한,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유급병가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우선사용 권장 방지,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와 관련한 신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유급휴가 우선사용 권장 방지,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과 관련한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와 규모 및 내용 등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

- (안 제17조제1항제6호 및 안 제62조의3)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유급병가를 소진하였음에도 여전히 부상 또는 질병(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)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,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상병휴직을 주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또한,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상병휴직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와 관련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국가의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에 대한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와 규모 및 내용 등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Ⅲ. 부대의견

- 개정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1786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